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전문개정 2021.11.15.
개정 2017.12.04.
개정 2013.12.06.
제정 2013.03.0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수원인제학원 법인정관 제36조의 6 정년보장교원의 심사」에 의거,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5인 내외의 정년보장교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4.>

제3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[제4조에서 이동 <2021. 11. 15.>]

제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1.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위한 심의
2. 관련 규정 심의
3. 기타
[제5조에서 이동 <2021. 11. 15.>]

제5조(심사대상)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중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는 교원으로,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교수 승진 임용 예정자로 한다.
[제6조에서 이동 <2021. 11. 15.>]

제6조(정년보장 임용제외자)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 임용교원에서 제외한다.
1. 법인정관 제41조 직위해제 및 해임에 의한 해당자
[제7조에서 이동 <2021. 11. 15.>]

제7조(사무) 본 위원회의 사무는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.
[제8조에서 이동 <2021. 11. 15.>]

제8조(기타)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[제9조에서 이동 <2021. 11. 15.>]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